

《다종다양한 교육》이 왜 안되냐?



이바라기초중고 63기 졸업생



유보무상화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01
교육을 받을 권리, 빼앗지 말라

일본당국의 이번 조치는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취학전의 시기에 모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 자기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의 권리를 빼앗게 된다.



02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의 기본리념과 어긋나는 불공평성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 및 《아동복지법상 인가외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유사한 유아보육, 보육의 실태가 있는 각종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어린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기본리념으로 하는 《개정 아이, 아이키우기지원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불공평한 처사이다.

03
대상외시설은 전체의 0.16%, 외국인차별이 아니냐?

인가시설(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약 4만 5천개소, 인가외보육시설 약 1만개소 계 5만 5천개소를 넘는 대상시설과 비교할 때 89개소, 약 0.16%밖에 안되는 각종학교인가를 받은 시설만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외국인학교만을 배제한 민족차별이다.

무상화대상에서 제외

0.16%

일본에 있는 유아교육·보육 시설 약 55,000 개소

89개소

(2020년 3월 19일 현재)



04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체들의 지원과 모순되는 일본정부의 조치

각종학교인 외국인학교유아시설은 각각 시설이 소재하는 자치체에서 《시립유치원보호자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이 사실은 이 시설들의 유아교육의 질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제외조치는 그 실태를 무시한 것이다.

“교육의 질”의 담보

05
제외하는 법적근거는 없다! 보육의 실태를 감안한 판단을 내려야

각종학교가 인가외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본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 인가외보육시설의 신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육의 실태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유보무상화제도란?◆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유보무상화)는 유치원, 보육원, 인정어린이원 등의 교육비용을 국가가 안받침하는 시책이다. 보육의 필요성이 인정된 인가외보육시설도 대상이 되는 한편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만이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제도 실시까지의 흐름◆

소비세인상의 증가뒀을 재정적원천으로 하여

- 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 ② 소비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

대상시설의 0.16%밖에 안되는 각종학교인가의 외국인학교유아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이유는

- ① 개별교육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다종다양하다.
- ② 아동복지법상 인가외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06
유엔의 제조약이 금지하는 차별적취급



근거법의 기본리념을 위반하고 각 자치체가 인가외보육시설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폐지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외국인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헌법 제14조, 유엔인종차별철폐조약, 어린이권리조약 등이 금지하는 차별적취급에 해당되며 모든 사람들이 부담하는 소비세의 분배에 대한 기대권을 짓밟는 것으로 된다.